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529호 |
| 의결 연월일 | 2013년 9월 일 (제323회) |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의자 | 정현의원외 6명 |
| 발의연월일 | 2013년 8월 26일 |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 헌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529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13년 8월 26일

발 의 자 : 정헌·황규철·권기수·김도경
유완백·윤성옥·이수완 의원 (7명)

1. 제안 이유

- 도내에 투자하려는 국내·외 기업, 국내복귀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운용중인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,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조항 신설(안 제4조의2)
- 나. [별표 2]의 대상을 '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시·도에 소재한 기업'으로 규정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[별표 2]의 대상란 중 “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중 별표 1”을 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지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~ 제3조(투자유치위원회 설치) (생략) | 제1조(목적) ~ 제3조(투자유치위원회 설치) (현행과 같음) |
| 제4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~ ③ (생략) | 제4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|
| (신 설) | <p>제4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</p> <p>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.</p> <p>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</p> <p>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</p> |

관 계 법 령

□ 행정심판법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
 2.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3.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(鑑定)을 한 경우
 4.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 5.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
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(疏明)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,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(正本)

을 송달하여야 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
⑦ 사건의 심리·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